

2025년도 제24차

금융통화위원회(임시)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5년 12월 19일(금)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창용 의장(총재)  
장용성 위원  
유상대 위원(부총재)  
황건일 위원  
김종화 위원  
이수형 위원

4. 결석위원 신성한 위원

5. 참여자	김웅 부총재보	권민수 부총재보
	박종우 부총재보	장정수 부총재보
	이재원 경제연구원장	이지호 조사국장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최용훈 금융시장국장	윤경수 국제국장
	주재현 외자운용원장	백무열 법규제도실장
	임건태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유재현 국제기획부장
	허현 의사팀장	박기덕 국제총괄팀장
	백봉현 외환시장팀장	김상훈 외환건전성조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장이 긴급발의로 의결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관련 부서가 최근 외환시장 여건과 제도 현황 등 발의 배경에 대해 보고하였음.

관련 부서는 현재 외화지수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국민연금의 외환스왑이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대미 투자자금 지출에 따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자금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음.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지속 등으로 현행 외화지준 제도하에서는 최저 지급 준비율 및 각종 규제비율 준수 목적 외에는 당행에 초과지준을 예치할 유인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지준을 초과하는 지준에 대해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외국환은행의 외화지준 예치유인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음. 한편,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지준제도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유로존의 경우에는 자국통화와 마찬가지로 외화예금 지준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첨언하였음.

적용금리는 필요지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초과지준에 대해서만 미 연준의 정책금리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음. 당행 수지상의 영향과 외화자산 운용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금리수준을 변경할 예정임을 덧붙였음.

다만, 외환스왑 등 국내 외화자금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초과지준 금리가 가급적 미 연준의 IORB(Interest on Reserve Balances) 수준을 상회하지 않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당행이 IORB 수준에 근접한 금리로 지준 부리를 할 경우 국내 주요 외국환은행의 단기 미국채, 타행 외화예치금, 외화 콜론(call loan) 자금 중 일부가 외화지준에 편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음.

외국환은행이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당행에 예치할 경우 리스크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이 가능하고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외국환은행이 기타 금융기관, 개인, 기업들에게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이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예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첨언하였음.

아울러 외국환은행들의 가용 외화여유자금에 중앙은행 초과지준 예치금을 추가하여 규제비율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금융기관들의 외화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음.

일부 위원은 금번 조치가 외환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최근 발표된 일련의 외환시장 관련 대책과 달리 외화지준부리는 향후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가 가동될 경우를 대비한 제도로써 추후에 환해지 물량이 나오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회는 과거에도 외화지준 부리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는지, 외환위기·금융 위기 등 위기시에도 동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였음.

관련 부서는 2008년 금융위기시 원화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준부리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었으나 외화에 대한 지준부리제도 도입은 금번이 최초라고 답변하였음.

이에 다른 위원은 과거 금융경제 위기시에는 동 수단이 외환당국의 마지막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거나 외부에 심각한 상황임을 자인하는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도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나타내면서 현 상황은 외환시장에서의 쓸림현상이 다소 있긴 하나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므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과거 금융위기시 당행이 실시하였던 원화에 대한 지준부리는 금융기관의 수지를 보전해주기 위해 실시한 사후적 조치인 반면, 금번 외화 지준부리는 사전적 조치로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언급하였음. 한편, 동 조치는 한시적 조치이며 향후 활용방안을 명확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또한 동 위원회는 관련 부서가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 내에서 당행 수지상 영향, 외화자산 운용 측면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용 금리수준을 변경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매월 지준적립된 실적을 바탕으로 이자를 지급하는데 정책이 의도한 해외운용자금의 유입 이외에도 국내시장의 단기 외화자금까지 지준예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에는 적용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등 유연성(flexibility)을 갖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회는 관련 부서가 금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이 확대되면서 기업 등 비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를 국내은행에 예치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동 제도의 부수적 효과 중 하나로 예상된다고 전제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내은행들이 외화예금에 대해 지급하는 금리가 미국의 금융기관이 외화예금에 제공하는 금리보다 높은 수준임을 설명하였음. 현재 티빌(T-bill) 금리가 IORB보다 약 15~20bp 낮은 상황에서 국내은행이 단기채 운용대신 지준으로 예치한다면 수익성 개선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첨언하였음. 또한, 당행수지의 측면에서는 원화지준 부리가 일방적으로 지출하는 통화관리비용인 데 반해, 외화지준 부리는 예치된 외화지준을 당행이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감안하면 순비용이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음.

마지막으로 동 위원은 금번 외화지준 부리 조치로 인해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균형있게 커뮤니케이션 해줄것을 당부하였으며, 시장의 기대가 일방향으로 쏠린 현 상황에서는 수행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어서 정책당국의 주된 외환시장 안정수단은 외환수급 여건의 구조적 개선과 변동성에 대응한 시장안정화 조치임을 강조하고 이를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증권사 간담회 등의 조치에 이어 금번 외화지준 부리 도입까지 일련의 안정화 조치가 산발적인 대책처럼 비추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각 제도와 기관간 공조체계(coordination)가 잘 확립되어야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동 위원은 외화지준 부리 도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의 고환율 상황은 여러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임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지난해 말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년초에는 관세협상 불확실성으로 고환율 현상이 지속된 것이며, 최근에는 매년 2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현금투자 부담에 더해 해외직접투자, 개인의 해외증권투자 수요 확대 등 여러 요인이 가세하면서 최근의 고환율 상황이 나타났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시장에서 금번 조치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이란 본래의 취지대로 인식하기보다는 외환수급 여건 악화에 따른 최후의 수단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세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의안 제38호 -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안)>

(1) 의장이 긴급발의로 의안 제38호를 상정하였으며,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초과 외화지준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외국환은행의 외화지준 예치 유인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토의가 있었음.

먼저 일부 위원은 5번 ‘기타 세부사항으로 금융기관별 이자지급 규모 산정, 이자지급 방법, 지급시기 등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결정한다’를 ‘총재에게 위임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이어서 5번, 6번 ‘한국은행 총재’ 부분도 동 안건이 내부 문서이므로 ‘한국은행’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4번 ‘적용 이자율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범위에 준하는 수준’을 연준의 스테이트먼트(statement)에 명시된 표현인 페더럴 펀즈 타겟 레인지(federal funds target range)를 반영하여 ‘적용 이자율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한다’로 표현을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3) 심의결과

수정가결

의결사항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안)(생략)